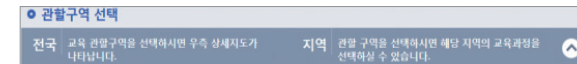


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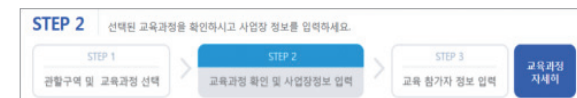
1 지도에서 관할구역 선택



2 교육과정 검색에서 "이동식"으로 검색한 후 과목명, 교육일자, 교육장소 등을 확인 후 우측 교육신청 클릭



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입력



1 교육과정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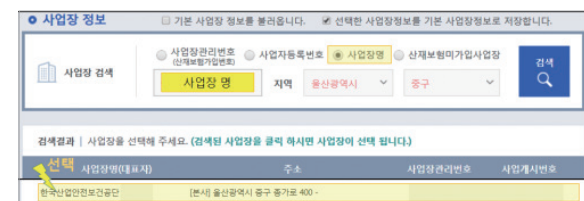
Table showing course details: 과목과정명 (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교육), 과목일자 (2018.05.10), 과목시간 (13:30-15:30), 과목장소 (경주 공산구 무연대로 202 우산동 공주유체력개발원 11동 대교육육 등 휴먼타워).

[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]

2-1 산재보험 가입된 사업장등록번호로 검색 후 선택 다음단계 선택



2-2 산재보험 가입된 사업장 명으로 검색 후 선택 다음단계 선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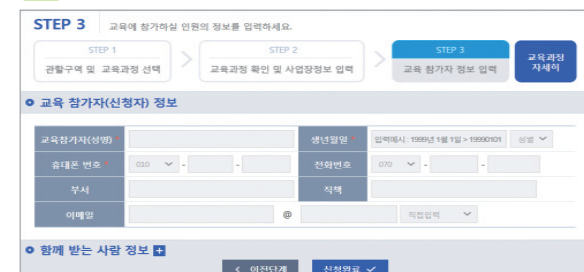
[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사업장]

2-3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정보를 직접 등록 다음단계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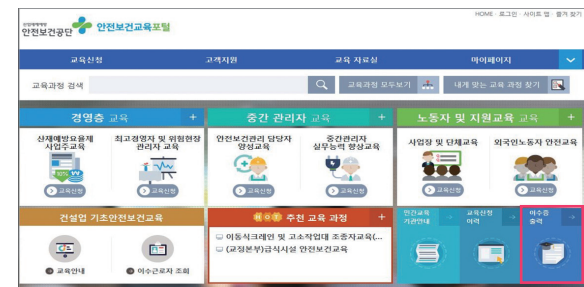


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 및 신청완료

06 교육참석



07 안전보건교육포털 이수증 출력 메뉴



이동식크레인(카고크레인) 및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조종자 교육 관련 Q&A

Q1 이동식크레인(카고크레인) 및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조종자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?

이동식크레인(카고크레인) 및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조종자 교육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(유경험자)는 '19.12.31까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종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, 교육 이수료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. ※ 이동식크레인 중 집게크레인 및 록크레인, 고소작업대 중 시저형 및 자주식은 조종자 교육 비대상

[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과정 신설] (19.1.31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)

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기중기면허 소지자 또는 다음 교육이수자에 한해 조종 가능하도록 취업제한규칙 일부개정됨. ▶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3개월 이상 조종(유경험자) - '19.12.31일까지, 16개 공단 지역본부에 2시간 교육이수시 조종 가능. ▶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신규조종자 - 지정검사기관(공단 교육원)에서 20시간 교육이수시 조종 가능 ('19년 10월 개설 예정)

Q2 조종교육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?

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(유경험자) 교육 문의전화

교육관련 문의전화 ▶ 교육신청방법(인터넷) : 1644-2275 ▶ 교육관련 : 1544-3089

Q3 조종교육 신청방법은 ?

조종교육(유경험자) 신청은 인터넷(www.koshats.or.kr)으로 접속하여 교육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Q4 조종교육(유경험자)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나요?

유경험자(3개월 이상)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유경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참석시 교육진행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사업주(개인차주) : 사업자 등록증 및 차량 등록증 - 회사에 소속된 조종자 :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-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: 차량등록증(교육대상자와 차주가 동일한 경우만 인정)

Q5 조종자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

유경험자(3개월 이상)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참석하셔도 교육이수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

Q6 교육이수확인서 발급방법 및 사용(제출)방법?

교육이수확인서는 교육을 신청하신 인터넷(www.koshats.or.kr)에 접속하시면 발급을 직접 할수 있으며 - 발급받으신 교육이수확인서는 향후 국가기관(고용노동부 등) 또는 건설사, 발주처 등에서 요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Q7 교육을 받지 않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실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(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)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
[산업안전보건법]

제47조(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)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Q8 2톤미만의 이동식크레인 조종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?

이동식크레인 조종자(유경험자) 교육은 이동식크레인의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야 합니다.

이동식크레인(차량탑재형) 탑승설비 부착 금지



중대재해발생현황

- 이동식크레인(차량탑재형)의 최근 8년간 총 재해건수는 57건(사망 62명, 부상 11명)
그 중 불법 탑승설비 부착으로 인한 재해 건수는 총 19건(사망 28명, 부상 6명)으로 약 33% 차지



관련법령
<자동차관리법> 제34조(자동차의 튜닝)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※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<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> 제86조(탑승의 제한)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. ※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이동식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 사례



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안전난간 해체 금지



중대재해발생현황

-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의 최근 8년간 총 재해건수는 76건(사망 86명, 부상 21명)
그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재해 발생 건수는 총 26건(사망 26명)으로 약 34% 차지



관련법령
<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> 제36조(사용의 제한) 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,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장치·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※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<안전인증고시_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> 42.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
안전난간 미설치 및 불법개조 사례



이동식크레인(카고크레인) 및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조종자 교육

“꼭” 받으세요!



이동식크레인(카고크레인) 및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조종자 교육안내



01 이동식크레인(카고크레인)과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조종자 교육이란?
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(카고크레인) 및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면허 보유(기중기면허) 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제도임

|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| (19.1.31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)

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기중기면허 소지자 또는 다음 교육이수자에 한해 조종 가능하도록 취업제한규칙 일부개정 됨

- ▶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3개월 이상 조종(유경험자)
 - '19.12.31일까지, 16개 공단 지역본부에 2시간 교육이수시 조종 가능
- ▶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신규조종자
 - 지정검사기관(공단 교육원)에서 20시간 교육이수시 조종 가능 ('19년 10월 개설 예정)

03 조종자 교육 대상

- 교육대상(유경험자)**
 - 이동식크레인(카고크레인) 및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조종자로서 3개월이상 경험이 있는자
 - ※ 교육신청방법 및 교육기간 등은 인터넷(www.koshats.or.kr) 참조
- 교육대상(신규)**
 - 이동식크레인(카고크레인) 및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조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자
 - ※ 신규 교육과정은 공단 교육원에서 '19.10월에 개설 예정



20명 이상 교육 신청시 출장 교육이 가능합니다.

02 조종자 교육 대상 차량

1 이동식크레인(카고크레인)



2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



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과정 신청 안내

☑ 교육 개요

- 목적 :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신청안내
- 교육일시 및 장소 : 인터넷 확인 가능(www.koshats.or.kr)
- 교육비 : 무료
- 교육대상 :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(3개월 이상 유경험자)
 - ※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는 교육 면제
 - ※ 20명 이상 교육 신청시 출장 교육 가능
- 교육시 지참 서류(3개월 이상 유경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)
 - 사업주(개인차주) : 사업자 등록증
 - 회사에 소속된 조종자 :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 - ※ 서류 미제출시 교육 참석 불가 또는 교육이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

☑ 교육 신청 방법



• 교육신청방법(인터넷) 문의 : 1644-2275
 • 교육 및 기타문의 : 1544-3089

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경력증명서 양식

[] 재 직 증명서
 [] 경 력 증명서

☑ 사업장 현황

회사명	대표자명
주소	전화번호
사업자 등록번호	팩스번호

☑ 재직 및 경력사항

성 명	주민번호	- *****
주 소	전화번호	
용 도		
재직기간		
담당업무		

위 사실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 ○○○○(인)

이동식크레인(카고크레인) 및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조종자 교육과정 신청 방법

☑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(www.koshats.or.kr) 접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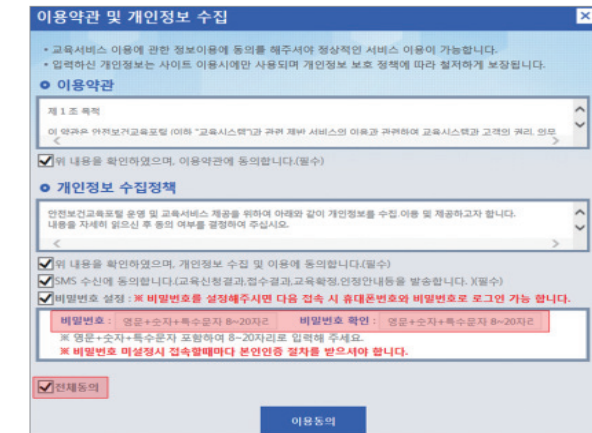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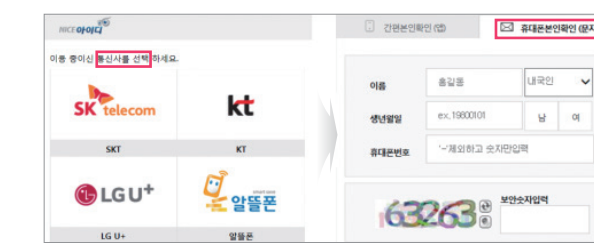
01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속 및 "로그인" 클릭



02 본인인증 (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클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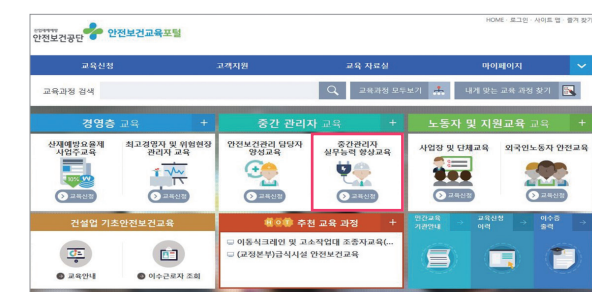


03 휴대폰인증 교육신청(통신사 선택 후 휴대폰본인인증으로 인증)



※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전체 동의 후 비밀번호 설정

04 "중간관리자 실무능력 향상교육" 교육신청



05 교육과정 신청



교육신청방법(인터넷) 문의 : 1644-2275
 교육 및 기타문의 : 1544-3089

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(www.koshats.or.kr)